##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감금·부착

## 명령

[인천지방법원 2011. 2. 25. 2010고합668,2011고합27(병합),36(병합),2010전고48(병합)]



## 【전문】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검 사】 김윤정

【변 호 인】 변호사 성기남 외 1인

##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2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피고인 2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2010고합668 사건의 범죄사실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

[이유]

]

【이유】

]

[이유]

【이유】

]

[이유]

1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